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2364
------------	------

제안년월일 : 2021년 4월 26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호대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7호), 성흠제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55호),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2021.4.26.)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국가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에 대해 서울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여 예우를 다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토록하고 할인비율은 20%로 하고자 함. (안 제7조제1항제13호 신설)
- 나.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토록하고 할인비율은 20%로 하고자 함. (안 제7조제1항제14호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14.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p> <p>1. ~ 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 ----- ----- -----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 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14.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u></p>